

안 번 호	2202246
의 퇴 인	김기웅의원
회 답 일	2024. 10. 7.
추 계 번 호	24D217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3조의2 신설(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계획 수립)	통일부장관은 남북합의서가 공포된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3조의2 신설(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계획 수립)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계획 수립(안 제23조의2 신설)

- 개정안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남북합의서 공포 후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계획 수립 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사업 계획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임
- 그러나 현 단계에서 남북합의서가 언제 공포될지 알 수 없으며, 남북합의서 내용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업 계획(예

를 들어 철도·도로 건설, 기후환경 관련 대책, 산림·방재 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

[표 1] 남북합의서 공포현황

공포번호	합의서명	공포일
제1호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03.8.23
제2호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3호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4호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제5호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05.8.8
제6호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제7호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8호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제9호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10호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제11호	남북해운합의서	
제12호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3호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06.5.2
제14호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	
제15호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07.5.22
제16호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	
제17호	노무현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	'07.8.21
제18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07.11.8
제19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07.12.6
제20호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1호	제1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합의서	'07.12.24
제22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08.1.8
제23호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 합의서	
제24호	9월 평양공동선언	'18.10.29
제25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18.11.2

자료: 통일부(2024.9)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여은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은구	02-6788-4673	cecil@assembly.go.kr